

직장예비군연대 규정

(제정 2012. 11. 6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직장예비군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직장예비군연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예비군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
2. 예비군 편성 및 자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3. 직장 민방위대의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
4.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(편성대상) 직장예비군연대 편성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
2.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
3.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
4. 고용원 중 예비군
5. 지원자

제4조(제대편성) ① 단과대학, 대학원, 교직원 제대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제대별 여건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이 용이하도록 편성한다.

② 예비군 자원을 고려하여 육군, 해군, 공군을 혼합하여 학과 단위로 편성한다.

③ 소대급 이하 편성 시 소대는 80명 내외로 편성하고, 분대는 학과의 학년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21명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분대로 편성한다.

제5조(자원관리) ①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신입학·편입학·복학에 따라 본교에 등록할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연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직장예비군연대는 학적 자료를 확인하여 편성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휴학·제적·졸업자는 학교편성에서 제외되며,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국가동원정보 체계를 통하여 지역예비군으로 진출한다.

제6조(교육훈련) 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수(조교수 이상)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침 일부보류자에 해당되어 향방기본훈련(8시간)만 부과된다.

② 훈련은 기본교육이 하계 방학 중에 실시되고 2학기에는 1차 보충, 2차 보충이 있으며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자는 고발 조치된다.

5-1-30-2 직장예비군연대 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